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06
-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외 11명)
- 발 의 일 : 2018년 12월 31일
- 회 부 일 : 2019년 1월 7일

2. 제안이유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관련 용어가 결산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회계법」의 ‘결산서’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포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명 및 각 조항의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자구를 ‘결산’ 등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중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서 등’으로 함.
- 나. 조례 근거법으로 ‘「지방회계법」 제3장(결산)’을 추가함(안 제1조).
- 다. ‘세입·세출결산서와’를 ‘결산 및’으로 함(안 제1조).
- 라.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서’로 하고 ‘(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삭제 함(안 제2조).
- 마.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를 ‘「지방회계법」 제14조’로 함(안 제2조).
- 바. ‘세입·세출결산’을 ‘결산’으로 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결과(2019. 1. 11 ~ 1. 18.)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과 관련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회계법」의 용어와 일치시킴으로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을 포괄하여 집행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취지 및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먼저, 지방자치단체 결산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결산서 등의 결산검사 및 지방의회 승인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회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결산 수행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로 작성하고, ‘세입·세출 결산’ 등을 결산서의 구성요소로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결산보고서의 수입·지출에 관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회계법」상 결산서의 구성·작성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결산보고서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도 결산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지방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각 목 생략)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각 목 생략)
2. 지출 (각 목 생략)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반면, 본 조례는 결산에 관한 의회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 (2018.1.4.)을 통하여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에 더하여 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제4조) 의무까지 본 조례에 포괄하여 규정한바 있으며, 본 개정안은 제명과 제1조(목적),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및 제5조(시장의 의무)의 ‘세입·세출 결산’ 관련 용어를 ‘결산’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의 결산에 관한 근거를 지방회계법상의 결산 규정으로 명시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 자료 제출 의무를 포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안 주요 내용 >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u>세입·세출 결산서</u>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u>결산서 등의</u>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세입·세출결산서와</u>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장에 따른 서울특별시 <u>결산 및</u>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u>세입·세출결산서</u>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u>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u> 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u>결산서</u>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u>결산서</u> 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u>세입·세출결산</u> 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u>결산</u> 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4조에 대하여 법령체계 및 연계성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결 : 각각의 안전에 대하여 가부를 판다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

※ 승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 등의 뜻으로 사용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